

기 호 : 사학 73

의결일자 : 2014. 12. 30.

# 2014학년도 법인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일반)

학 교 법 인 성 지 학 원

# 2014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수 입 : ₩13,040,295,000

지 출 : ₩13,040,295,000

잔 액 : 없 음

학교법인 성지학원

## 예 산 총 칙

제1조 : 2014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총액을 각 ₩13,040,295,000으로 한다.

제2조: 수입,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자금예산 명세표와 같다.

## 2014학년도 법인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관별 일람표(일반)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관 별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관 별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5200) 전입및기부수입	1,525,000	1,947,000	-422,000	(4100) 보수	0	20,000	-20,000
(5400) 교육외수입	11,565	11,565	0	(4200) 관리운영비	171,950	689,950	-518,000
(2200) 고정부채입금	10,000,000	11,200,000	-1,200,000	(4400) 교육외비용	173,300	193,110	-19,810
(3100) 기본금	430,000	1,072,665	0	(4500) 전출금	11,477,000	11,477,000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073,730	1,072,665	0	(12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98,000	198,000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020,045	1,653,170	-633,125
계	13,040,295	14,231,230	-1,190,935	계	13,040,295	14,231,230	-1,190,935

수

입

# 법인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일반)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 수 입

[단위:천원]

과 목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5200) 전입및기부수입			1,525,000	1,947,000	-422,000	
	(5210)	전입금수입	25,000	25,000	0	
		(5217) 수익사업전입금	25,000	25,000	0	○ 수익회계 운영수익 전입
	(5220)	기부금수입	1,500,000	1,922,000	-422,000	
		(5221) 일반기부금	1,500,000	1,922,000	-422,000	○ 부산은행, 교직원, 대학교회 등
(5400) 교육외수입			11,565	11,565	0	
	(5410)	예금이자수입	10,000	10,000	0	
		(5411) 예금이자	10,000	10,000	0	○ 예금이자 수입
	(5420)	기타교육외수입	1,565	1,565	0	
		(5421) 잡수입	1,565	1,565	0	
(2200) 고정부채입금			10,000,000	11,200,000	430,000	
	(2210)	장기차입금	10,000,000	11,200,000	430,000	
		(2211) 장기차입금 차입	10,000,000	11,200,000	-1,200,000	○ 대학 캠퍼스 이전사업비 차입금

과 목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3100)	기본금		430,000	0	430,000	○ 설립자의 특수관계인
	(3110)	출연기본금	430,000	0	430,000	
		(3111) 설립자기본금	430,000	0	430,000	
합 계			11,966,565	13,158,565	-1,192,000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1,073,730	1,072,665	1,065	
자금수입예산 총계			13,040,295	14,231,230	-1,190,935	

# 지출



## (2) 지 출

[단위:천원]

과 목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4100)	관리운영비		0	20,000	-20,000	
	(4120)	직원보수	0	20,000	-20,000	
		(4121)	0	20,000	-20,000	
		직원급여				
(4200)	관리운영비		171,950	689,950	-518,000	
	(4220)	일반관리비	32,250	517,250	-485,000	
		(4213)	0	500,000	-500,000	
		조경관리비				
		(4221)	5,500	10,500	-5,000	○ 법인업무 출장여비
		여비교통비				
		(4224)	1,000	1,000	0	○ 예/결산서 제본비 및 기타 인쇄비
		인쇄출판비				
		(4227)	300	300	0	○ 우편물 발송경비
		통신비				
		(4228)	2,000	2,000	0	○ 감사협의회비 /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비 등
		제세공과금				
		(4229)	23,450	3,450	20,000	○ 증명서 발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인지세
		지급수수료				○ 중학교(폐교) 부지 재산감정 수수료
	(4230)	운 영 비	139,700	172,700	-33,000	
		(4233)	105,900	138,900	-33,000	○ 수익사업 개발 용역 / 법률자문 및 소송 용역비
		일반용역비				○ 고등학교 이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과 목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4234) 업무추진비	1,000	1,000	0	○ 법인 경조사비 ○ 이사회 회의비(년 12회) ○ 퇴직자 기념패 제작 ○ 법인 운영경비
		(4236) 회 의 비	23,600	23,600	0	
		(4237) 행 사 비	1,000	1,000	0	
		(4239) 기타운영비	8,200	8,200	0	
(4400)	교육외비용		173,300	193,110	-19,810	○ 차입금 이자 ○ 해외출장 예약환불 수수료 등
	(4410) 지급이자		173,100	193,100	-20,000	
		(4411) 지급이자	173,100	193,100	-20,000	
	(4420) 기타교육외비용		200	10	190	
		(4421) 잡손실	200	10	190	
(4500)	전 출 금		11,477,000	11,477,000	0	○ 법인전입금 분담금 / 대학발전기금 전출
	(4510) 전 출 금		11,477,000	11,477,000	0	
		(4511) 경상비전출금	11,477,000	11,477,000	0	
(120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98,000	198,000	0	○ 공원부지(남산동 991-2) 교환차액 전출
	(1210) 설치학교		198,000	198,000	0	
		(1211) 대학	198,000	198,000	0	

과 목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합 계			12,020,250	12,578,060	-557,810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1,020,045	1,653,170	-633,125	○ 일반용역비(중도금/잔금)
자금지출예산 총계			13,040,295	14,231,230	-1,190,935	

기 호 : 사학 73

의결일자 : 2014. 12. 30.

# 2014학년도 법인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수익)

학 교 법 인 성 지 학 원

# 2014학년도 수익사업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수 입 : ₩422,245,000

지 출 : ₩422,245,000

잔 액 : 없 음

학교법인 성지학원

## 예 산 총 칙

제1조 : 2014학년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총액은 각 ₩422,245,000으로 한다.

제2조: 수입,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자금예산 명세표와 같다.

## 2014학년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관별일람표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관 별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관 별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5400) 교육외수입	57,060	58,320	-1,260	(4200) 관리운영비	25,500	37,700	-12,2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65,185	358,379	6,806	(4500) 전출금	25,000	25,000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71,745	353,999	17,746
계	422,245	416,699	5,546	계	422,245	416,699	5,546

수

입



# 법인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수익)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 수 입

[단위:천원]

과 목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5400) 교육외수입			57,060	58,320	-1,260	
	(5410) 예금이자수입		20,000	20,000	0	○ 예금이자 수입
		(5411) 예금이자	20,000	20,000	0	
	(5420) 기타교육외수입		750	10	740	○ 부가가치세 환입
		(5421) 잡수입	750	10	740	
	(5430) 수익재산수입		36,310	38,310	-2,000	○ 풋살장, 테니스장 및 식물원 임대 수입
		(5431) 임대료수입	36,300	38,300	-2,000	
		(5432) 배당금수입	10	10	0	
합 계			57,060	58,320	-1,260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365,185	358,379	6,806	
자금수입예산 총계			422,245	416,699	5,546	

# 지출

## (2) 지 출

[단위:천원]

과 목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4200)	관리운영비		25,500	37,700	-12,200	
	(4210)	시설관리비	1,000	5,000	-4,000	
		(4215)				
		시설용역비	1,000	2,000	-1,000	○ 중학교(폐교) 건물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4219)				
		기타시설관리비	0	3,000	-3,000	
	(4220)	일반관리비	19,000	27,200	-8,200	
		(4228)				
		제세공과금	19,000	27,200	-8,200	○ 수익용/비교육용토지 재산세 ○ 중학교(폐교) 건물 환경개선 부담금 ○ 중학교(폐교) 건물 전기세
	(4230)	운영비	5,500	5,500	0	
		(4233)				
		일반용역비	5,500	5,500	0	○ 세무결산용역비
(4500)	전 출 금		25,000	25,000	0	
	(4510)	전 출 금	25,000	25,000	0	
		(4511)				
		경상비전출금	25,000	25,000	0	○ 법인일반회계 전출
합 계			50,500	62,700	-12,200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371,745	353,999	17,746	

과 목			2차 추경액	1차 추경액	증감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자금지출예산 총계			422,245	416,699	5,546	

# 학교법인 성지학원

[2014학년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이사	8인	2인
참석이사	8인	0인

1. 회의일시: 2014년 12월 30일(화) 10:30~12:20 (소집통지일: 12월 19일)
2. 회의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F606 회의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8인 (이사장 백성애  
이사 정해린, 최정락, 정길수, 오지섭, 윤희선, 우신고, 강신도)
  - 불참임원: 0인
  - 배석인원: 사무국장 백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사행정실장
4. 안건
  - 제1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제 및 편제개편(안)
  - 제2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면(안)
  - 제3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전임교원 직종신설(안)
  - 제4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교원임면(안)
  - 제5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교감직무연수 대상자 추천(안)
  - 제6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충원계획(안)
  - 제7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기채 기간연장(안)
  - 제8호 의안: 법인 2차 추경예산(안)
  - 제9호 의안: 법인 이사 선임(안)
  - 기타: 성지고등학교 운영관련 보고 2건, 간서명 이사 선임
5. 개회선언

오전 10시 30분에 백성애 이사장께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재적이사 8명이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받은 후, 이사회 개최에 대한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4학년도 제10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이사장의 요청으로 정길수 이사의 기도인도 후 회의가 시작되다>

<간서명>	백성애	정해린	강신도
-------	-----	-----	-----

6. 안전심의

□ 제1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제 및 편제개편(안)

- 1)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직제 및 편제 개편과 이에 따른 정관, 학칙, 직제규정 개정 을 함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사행정실장에게 설명하게 하다.
- 2) 부산외국어대학교 정기영 인사행정실장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다.

○ 직제 및 편제 개편의 목적

- 2014년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결과(대교협 한국교양기초교육원-681, 2014.10.13.)에 따라 교양교육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 발생함.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학부교육 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 준비를 위해 대학 내 교육 관련 부서(학과)의 개편 필요성 발생함.
- 위와 관련한 2015학년도 대학 교육과정(교양, 전공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개편 준비 중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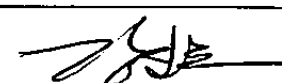
○ 개편 내용

- 단과대학에 만오교양대학 신설: 교양교직학부 폐지, 교직과 분리 신설
- 만오교양대학 산하에 “기초역량교육센터”, “인문교양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체험인성교육센터”, “교양교육위원회” 설치
- 교무처산하 교양기초인성교육원(교양인성교육센터, 기초교육센터), 외국어교육원(영어교육센터) 폐지
- 교학부총장 산하 교육평가혁신센터 신설
-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산하 아시아공동체연구소 설치

○ 관련 규정류 개정

- 정관

현행	개정안
제92조(하부조직) ② 대학교에 교무처, 기획특성화처, 학생복지처, 입학관리처, 산학취업처, 국제교류처, 경영지원실, 인사행정실, 캠퍼스관리본부, 홍보미디어센터를 둔다.	제92조(하부조직) ② ----- ----- ----- -- 홍보미디어센터, 교육평가혁신센터를 둔다. 부 칙(개정 . . .)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백 영애	정 해린	
-------	------	------	---

- 학칙

현행	개정안
제2조(대학 및 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유럽미주대학, 아시아대학, 인문사회대학, 상경대학, 이공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 <u>교양교직학부와</u> 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통상경영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및 TESOL대학원을 두며,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조(대학 및 대학원) ① ----- ----- ----- <u>만오교양대학, 교직과</u> ----- ----- -----  부 칙(개정 ...)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직제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총장 직속기관) ① 총장 직속기관으로 대학교회, 경영지원실, 인사행정실, 캠퍼스관리본부, 홍보미디어센터를 둔다. 제13조(교학부총장 직속기관) ① 교학부총장 직속기관으로 교무처, 기획특성화처, 학생복지처, 입학관리처를 둔다. 제14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지원팀, 학사관리팀,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직과정부, <u>교양기초인성교육원, 학사지원센터, 외국어교육원</u> 을 둔다. ② <u>교양기초인성교육원</u> 에 교양인성교육센터, 기초교육센터를 둔다. ③ 외국어교육원에 영어교육센터를 둔다. 제21조(보직) ① (생략) ② 각 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제23조(대학) 이 대학교에 유럽미주대학, 아시아대학, 인문사회대학, 상경대학, 이공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 <u>교양교직학부</u> 를 둔다. <신설>  제28조(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에 <u>외국어연구소, 다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 국제통상연구소, 동남아시아원, 지중해지역원, 중남미지역원</u> 을 둔다.	제7조(총장 직속기관) ① ----- 교목실, ----- ----- 제13조(교학부총장 직속기관) ① ----- ----- 입학관리처, <u>교육평가혁신센터</u> 를 둔다. 제14조(교무처) ① ----- -----, <u>학사지원센터</u> 를 ----- ② 삭제  ③ 삭제 제21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 <u>교목실장은 목사자격자로 한다.</u> 제23조(대학) ① ----- ----- ----- <u>만오교양대학, 교직과</u> 를 둔다. ② <u>만오교양대학</u> 에 <u>기초역량교육센터, 인문교양교육센터, 체험인성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u> 를 둔다. 제28조(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 ----- -----, <u>아시아공동체연구소, 동남아시아원</u> , ----- -----  부 칙(개정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의 글로벌창의융합에 관한 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백수아	정해린	정호
-------	-----	-----	----

3) 오지섭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최정락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 제2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임면(안)

1)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임면 승인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사행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2) 부산외국어대학교 정기영 인사행정실장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아래의 2015학년도 1학기 대상자 71명 중 2015년 3월 1일자 재임용 52명, 2015년 2월 28일자 면직 19명, 2015년 1월 1일자 특별채용 4명 그리고 직제/편제 개편에 따른 2015년 1월 1일자 전보발령 15명에 대해 결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아래 52명 재임용

No.	이름	소속	재임용기간	No.	이름	소속	재임용기간
1	김민희	영어과	'15.03.01.~ '18.02.28.	27	Sato Hazuki(사토)	커뮤니케이션 일본어과	'15.03.01.~ '17.02.28.
2	양영익	EU지역통상학과	상동	28	Suwa Akihiro(스와)	비즈니스일본어과	상동
3	김창욱	골프전공	상동	29	Kitano Nao(기타노)	비즈니스일본어과	상동
4	조재형	GLE	상동	30	Nagano Aki(나가노)	비즈니스일본어과	상동
5	송효원	교육대학원	상동	31	Sanui Kyouko(사누이)	비즈니스일본어과	상동
6	최영준	교육대학원	상동	32	Hori Hiroko(호리)	비즈니스일본어과	상동
7	김영철	중남미지역원	상동	33	Nemoto Naoko(네모토)	비즈니스일본어과	상동
8	권영욱	국제무역학과	'15.03.01.~ '17.02.28.	34	Sora Sachiko(소라)	비즈니스일본어과	상동
9	윤희각	영상미디어학과	상동	35	Matsumoto Sayuri (마츠모토)	비즈니스일본어과	상동
10	김남수	GLE	상동	36	Jin Ling(김령)	중국어어 문화콘텐츠전공	상동
11	Antony Jackson (잭슨)	영어과	상동	37	Liu Chen(유첸)	커뮤니케이션 중국어전공	상동
12	Barbara Waldern (바바라)	영어과	상동	38	Takiankao Panita (파니따)	태국어과	상동
13	Jeffrey Lebow (리보)	영어과	상동	39	Dao Muc Dich (다오묵딕)	베트남어과	상동
14	Clarence E. Hodges(하지스)	영어과	상동	40	Phung Ngoc Kiem (퐁응옥끼엠)	베트남어과	상동
15	Lauren Harvey (하비)	영어과	상동	41	Do Van Hieu (도반히에우)	베트남어과	상동
16	Pyra Jolanta K (올란타)	영어과	상동	42	Ma May Tharaphi (마메따라피)	미얀마어과	상동
17	Clabaux Laurent Bernard(클라보로랑)	프랑스어과	상동	43	Leslie Steven Miller(밀리어)	국제비서학과	상동
18	Brice Airvaux (에르보)	프랑스어과	상동	44	Michael Edward Dixon(딕슨)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상동
19	Rosa Eugenia Rivas Hurtado(로사)	스페인어과	상동	45	John Gower(가우어)	영어교육센터	상동
20	Paiva Aline Fraihna(파이바)	포르투갈 (브라질)어과	상동	46	Michael Cassidy (마이클)	영어교육센터	상동

<간서명>      배영애      정해리      강호



No.	이름	소속	재임용기간	No.	이름	소속	재임용기간
21	Gianez Bruno (브루노)	포르투갈 (브라질)어과	상동	47	James Mcivor (맥가이버)	영어교육센터	상동
22	Ospanaliyeva Bibigul(비비굴)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상동	48	Justin H Joh (저스틴조)	영어교육센터	상동
23	Ayna Khandaeva (아이나)	러시아어전공	상동	49	Elizabeth Tegan Smith(테간)	영어교육센터	상동
24	Shibata Fumitake (시바타)	커뮤니케이션 일본어과	상동	50	Clauson Timothy John(클라우슨)	영어교육센터	상동
25	Hiranaka Yukari (히라나카)	커뮤니케이션 일본어과	상동	51	Stankiewicz Mariusz Bartosz(마리우스)	영어교육센터	상동
26	Sawai Ryosuke (사와이)	커뮤니케이션 일본어과	상동	52	Eigenberg Richard Steven(아이젠버그)	영어교육센터	상동

- 아래 19명 면직

No.	소속	영문명(국문명)	No.	소속	영문명(국문명)
1	스페인어과	Leonardo Daniel Mendoza Mejia(레오나르도)	1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과	Juli Ooi(줄리우이)
2	커뮤니케이션 일본어과	Niwayama Mariko(니와야마)	12		Agus Susanto(수산또)
3		Kawano Natsuko(나츠코)	13		Donny Eros(에로스)
4		Taki Rie(타키)	14		Saiki Katsuhiko(사이키)
5	비즈니스일본어과	Iida Makiko(마키코)	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Huang Zhenhui(황정혜)
6	중국 지역통상전공	Jin Xiaomei(김효매)	16		LI Xian(이선)
7		Wu Zheng(무정)	17		Xu Li(쉬리)
8	태국어과	Sengnet Rujira(루찌라)	18		Du Haifeng(독해봉)
9	베트남어과	Nguyen Thanh Tung(타잉퐁)	19	영어교육센터	Warmington Julian John Parkes(줄리인)
10		Nguyen Van Hieu(응웬반히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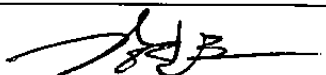
- 아래 4명 신규임용(특별채용)

성명	직종	소속	임용기간
김영신	산학협력중점교원	동남아창의인재 사업단	'15.01.01.~'17.02.28.
Peregrino Jovy(조비)	외국인전임교원		'15.01.01.~'17.02.28.
Sok Rithy(쏭리티)	외국인전임교원		'15.01.01.~'17.02.28.
Myo Oo(묘우)	외국인전임교원	미얀마어과	'15.01.01.~'17.02.28.

- 아래 15명 전보

원 소속	대상자	발령 소속
교양교직학부	이재봉	만오교양대학
	이지영, 이정아	교직과
교무처 <외국어교육원> 영어교육센터	류현주, 방준, 가우어, 마이클, 부너, 맥가이버, 저스틴조, 테간, 클라우슨, 마리우스, 줄리인, 아이젠버그	만오교양대학 < 외국어교육센터

3) 강신도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최정락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간서명>	백성애	정해린	
-------	-----	-----	---

□ 제3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전임교원 직종신설(안)

1)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전임교원 직종신설과 이에 인사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사행정실장에게 설명하게 하다.


2) 부산외국어대학교 정기영 인사행정실장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다.

○ 필요성

- 각종 정부 평가 대응을 위해 2015. 4. 1차 전임교원확보를 목표값 72% 충족을 위함 (2014. 4. 1차 65.11%).
- 목표값 달성을 위하여 인건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연구)영역을 강화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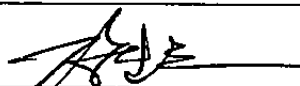
○ 신설내용

구분	교육중점전임교원 (일반학과)	교육중점전임교원 (국고사업수혜학과)	교육중점전임교원 (교양대학)
책임시수	15시간		
연봉액	3,000만원		
계약기간 (A)	2년		
재임용기준 (B)	①업적평가 교육영역 690점 ②강의평가 4.7점(상위 20%) ③학생취업 6명 ④근무업적평가 35점	①업적평가 교육영역 640점 ②강의평가 4.6점(상위 30%) ③학생취업 6명 ④근무업적평가 40점	①업적평가 교육영역 750점 ②강의평가 4.7점(상위 20%) ③연구실적물 140% ④근무업적평가 35점
승진기준 (C)	·시기: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평가기준 ①업적평가 교육영역 690점 ②강의평가 4.7점(상위 20%) ③학생취업 8명 ④근무업적평가 40점	·시기: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평가기준 ①업적평가 교육영역 640점 ②강의평가 4.6점(상위 30%) ③학생취업 8명 ④근무업적평가 45점	·시기: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평가기준 ①업적평가 교육영역 750점 ②강의평가 4.7점(상위 20%) ③연구실적물 240% ④근무업적평가 40점
직종전환 (전임교원B) (D)	·시기 : 부교수 승진대상자 또는 부교수로서 직종 전환을 신청한 자 ·평가기준 승진기준+⑤기여도 평가 S등급 2회, ⑥총장면담	·시기 : 부교수 승진대상자 또는 부교수로서 직종 전환을 신청한 자 ·평가기준 승진기준+⑤기여도 평가 S등급 2회, ⑥총장면담	·시기 : 부교수 승진대상자 또는 부교수로서 직종 전환을 신청한 자 ·평가기준 승진기준+⑤기여도 평가 S등급 2회, ⑥총장면담
기타 공통사항	·연구실 2인 1실 ·교원연수, 전체교수회의, 학과 회의 참석 가능 ·직종전환이 안될 경우, 부교수까지 승진 ※ 기타 공통사항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간서명>	백영애	정해린	
-------	-----	-----	---

○ 관련 규정류 개정  
- 전임교원인사규정

현행	개정안
제2조(교원의 구분) ① (생략) 3. (신설)	제2조(교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3. <u>교육중점전임교원 : 교육 및 학생지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일반학과, 국고사</u> <u>업수혜학과, 교양대학으로 구분한다.</u>
제7조(계약제 임용) ① (생략) 1. 근무기간 나. <u>산학협력중점교원 : 2년</u>	제7조(계약제 임용) ① (현행과 같음) 1. 근무기간 나. <u>교육중점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인전임교원 : 2년</u>
제19조(재임용심사) ①~② (생략) 3. (신설) ③ (생략) ④ 제18조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신설)	제19조(재임용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3. 상기표의 (B)사항 삽입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u>교육중점전임교원: 재임용심사의신청서 1부, 교수업적보고서 1부, 연구실적 심사조서 1부(교양대학만), 연구실적물 각 1부(교양대학만)</u>
제23조(체류기간) (생략) 3. (신설)	제23조(체류기간) (현행과 같음) 3. <u>교육중점전임교원 :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u>
제24조(연구실적 최저요건) ① (생략) 3.(신설)	제24조(연구실적 최저요건) ① (현행과 같음) 3. <u>교육중점전임교원(교양대학) : 240%(임용 후 취득한 박사학위논문은 200%인정)</u>
제25조(업적평가 최저요건) ① (생략) 4.(신설)	제25조(업적평가 최저요건) ① (현행과 같음) 4. <u>교육중점전임교원: 상기표의 (C)사항 삽입</u>
제26조(종합평가포인트 최저요건) ①~③ (생략)  ④ 전임교원A, <u>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인전임교원</u> 은 종합평가 포인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종합평가포인트 최저요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교육중점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u> -----
제27조(제출서류) (생략) 3.(신설)	제27조(제출서류) (현행과 같음) 3. <u>교육중점전임교원 : 교수업적보고서 1부, 연구실적 심사조서 1부(교양대학만), 연구실적물 각 1부(교양대학만)</u>
제39조(직종전환 대상) <u>산학협력중점교원과 외국인전임교원</u> 중 부교수 승진대상자 또는 부교수로서 직종 전환을 신청한 자로 한다.	제39조(직종전환 대상) ① <u>교육중점전임교원과 외국인전임교원</u> -----
제40조(직종전환 최저요건) (생략) (신설)	제40조(직종전환 최저요건) (현행과 같음) 1. <u>교육중점전임교원(최근 5년간)</u> 상기표의 (C)(D) 사항 입력
제41조(제출서류) (생략)	제41조(제출서류) (현행과 같음)

<간서명>	백성애	정해리	
-------	-----	-----	---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9조(산학협력중점교원 근무업적평가)</p> <p>④ 근무업적평가는 [별표3]와 같이 10개 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 당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합산한다.</p>	<p>1. 교육중점전임교원 : 교수업적보고서 1부, 연구실적 심사조서1부(교양대학만), 연구실적물 각 1부(교양대학만)</p> <p>제49조(교육중점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근무업적평가)</p> <p>④ 교육중점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근무업적평가는 각 [별표3], [별표3-1], [별표3-2], [별표3-3]-----</p> <p>부 칙(개정 . . .)</p> <p>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종전 임용된 교육중점전임교원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임용된 교육중점전임교원의 현 임용 기간 동안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현 임용기간 동안 재임용에 대한 최저요건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업적평가-교육영역 630점, 강의평가평점-4.6점, 학생취업-3명(기준을 초과 할 경우, 1명당 강의평가 0.1점 차감), 근무업적평가-35점</p> <p>2. 승진평가대상기간 동안 승진 요건이 변경된 경우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을 해당 기간별로 각각 적용하며 현 임용기간 동안 승진임용에 대한 최저요건 다음과 같다.</p> <p>업적평가-교육영역 630점, 강의평가평점-4.6점, 학생취업-5명, 근무업적평가-40점</p> <p>3. 직종전환평가대상기간 동안 직종전환 요건이 변경된 경우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을 해당 기간별로 각각 적용하며 현 임용기간동안 직종전환의 연간 최저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업적평가-교육영역 630점, 강의평가평점-4.6점, 학생취업-5명, 근무업적평가-40점, 기여도 평가 S등급 2회</p>

3) 우신고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길수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불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간서명>	배승애	정해린	정길수
-------	-----	-----	-----

□ 제4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교원임면-보직사퇴(안)

- 1) 이사장은 성지고등학교 교원임면(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은 성지고등학교 현 이대의 교감의 임기와 2015년 2월 28일자로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관할청인 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결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3) 강신도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희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 제5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추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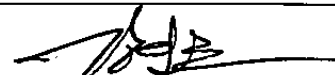
- 1) 이사장은 성지고등학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추천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은 성지고등학교의 현 이대의 교감의 임기가 2015년 8월 31일까지이나 2월 28일자로 보직사퇴 의사를 제출하였기에 금년 상반기 중에 교감자격연수자를 추천하여야 하므로, 고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이기민 교사(1958.10.01., 기술·가정)를 교감자격연수자로 교육청에 추천하기 위해 결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3) 우신고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윤희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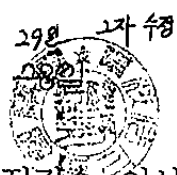
□ 제6호 의안: 성지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총원계획(안)

- 1) 이사장은 성지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총원계획 승인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은 성지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다음의 교원총원계획을 설명하다.

○ 기간제 총원 인원: 23명

교과명	총원인원	교과명	총원인원
국어	6명	체육	3명
수학	3명	음악	1명
영어	5명	미술	1명
사회	1명	중국어	1명
과학	1명	전문상담	1명

<간서명>  정 해 린 



○ 기간제 임용기간: 2015년 3월 1일~2016년 2월

3) 최정락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길수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 제7호 의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기채 기간연장(안)

1)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기채 기간연장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2)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다.

○ 기채기간 연장대상

대출금액	교육부 승인일	대출약정	실대출일자	적용이율 (12월 기준)
40억원	2014.01.10.	2014.01.21.	2014.01.21.	3.14%
180억원	2014.02.11.		2014.02.11.	
74억원	2014.02.26.		2014.02.26.	

※ 한국사학진흥재단 적용 이율(12월 기준): 3.68%

○ 부산은행은 지난 1년간 대학과 법인에 한국사학진흥재단 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였고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으로의 대환 신청보다는 부산은행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대출연장심사를 요청하다.

- 대출연장금액: 294억원
- 대출기간: 2015년 01월 21일~ 2016년 01월 20일(1년)
- 대출기관: 부산은행
- 적용이율: 3.14%(2014년 12월 현재 기준), 변동금리
- 담보: 신용대출
- 상환자원: 교비(이자) 및 교육용재산 매각대금(우암동캠퍼스 부지)

3) 강신도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정해린 이사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간서명>	백승아	정해린	
-------	-----	-----	--

□ 제8호 의안: 2014년도 법인 2차 추경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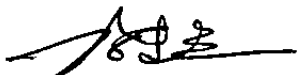
- 1) 이사장은 법인의 201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은 추가경정예산내용과 다음의 예산액을 설명하다.  
- 회계별 예산 요약

구 분	2차 추가경정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1. 수익회계(A)	422,245,000	416,699,000	5,546,000
2. 일반회계(B)	13,040,295,000	14,231,230,000	-1,190,935,000
3. 내부거래제거(C)	25,000,000	25,000,000	
법인회계(1+2-3)	13,437,540,000	14,622,929,000	-1,185,389,000

- 3) 정해린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 제9호 의안: 법인 임원 선임(안)

- 1) 이사장은 법인임원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2) 사무국장은 정해린 이사와 최정락 이사가 2015년 3월 22일자 우신고 이사가 2015년 3월 31일자로 임기 만료하는 사실을 알리고, 이사장은 지난 임기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다.
- 3) 이사장이 정해린 이사를 잠시 퇴실시킨 후 정해린 이사 후임이사를 추천하여 줄 것을 참석이사들에게 요청하니 우신고 이사의 동의와 윤효선 이사의 재청 그리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해린 이사를 중임기로 의결하다. 정해린 이사가 회의장으로 입실 후 참석이사들에게 인사하다.
- 4) 이어서 이사장이 최정락 이사를 잠시 퇴실시킨 후 최정락 이사 후임이사를 추천하여 줄 것을 참석이사들에게 요청하니 정길수 이사의 동의와 오지섭 이사의 재청 그리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교육경험 이사 최정락 이사를 중임기로 의결하다. 최정락 이사가 회의장으로 입실 후 참석이사들에게 인사하다.
- 5) 이어서 이사장이 우신고 이사를 잠시 퇴실시킨 후 우신고 이사가 임기 만료 시 사직의

<간서명>	백성애	정해린	
-------	-----	-----	---

의사를 밝힌 바를 전하고 교육경험이 있는 후임 이사 선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선임 이사로 고신대 부총장을 지내고 현재 대학교회 담임목사로 재임 중인 이복수 목사를 법인 이사로 추대할 것을 이사장이 발의하고 강신도 이사의 동의와 최정락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 6) 우신고 이사가 회의장으로 입실 후 이사장이 우신고 이사에 대하여 임기만료와 동시에 해임하며 만료 시까지 본 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다.
- 7) 이사장이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확인하다.

현 임원	후임	
	선임자	임기
정해린	중임: 정해린	2015년 3월 23일~2019년 3월 22일
최정락(교육)	중임: 최정락(교육)	2015년 3월 23일~2019년 3월 22일
우신고(교육)	신임: 이복수(교육)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

□ 보고

- 1) 법인 사무국장은 성지고등학교 ( ) 교사의 징계결정 불복과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하다.
- 2) 법인 사무국장은 성지고등학교 2015학년도 교무업무의 조직개편과 보직교사 임명사항을 보고하다.
- 3) 회의록 공개 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징계대상 개인의 신상은 비공개 처리하기로 강신도 이사 동의와 우신고 이사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기타

- 1)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다.
- 2) 최정락 이사는 이사장, 정해린 이사, 그리고 강신도 이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고 윤희선 이사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

7. 폐회선언

<간서명>	배성애	정해린	강신도
-------	-----	-----	-----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12시 20분에 2014학년도 제10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전원 서명 날인하다.

2014년 12월 30일

학교법인 성지학원	이 사 장	백 성 애	백성애
	이 사	정 해 린	정해린
	이 사	정 길 수	정길수
	이 사	최 정 락	최정락
	이 사	윤 효 선	윤효선
	이 사	오 지 섭	오지섭
	이 사	우 신 고	우신고
	이 사	강 신 도	강신도